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소재지 []입소정원
[]명 청 []시 설 장

변경인가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시설명			
	시설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 녀)
		소재지	
	변경 후	시설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녀)
		소재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명청 []입소정원 []시설장)의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